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3.)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
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의원)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 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 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가. 우편물·탁송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8조제3호의2·안 제48조의2제1호 신설 등)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¹⁾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등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음²⁾.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1)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흙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磷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2) 「식물방역법」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을 받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 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상기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여 고의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검역을 받지 아니하되 고의가 아닌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검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 ----- ----- -----.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현행	개정안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u><신 설></u>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크 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제48조의2(벌칙) ----- ----- -----. <u>1.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고의로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u> <u>1의2.·1의3.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u>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4의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5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우편·택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식물 등에 대한 우편·택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 중 ‘자가소비용’으로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대하여는 입법 취지, 동일 법률 내 법규정의 통일성, 행위 목적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의견³⁾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종자협회)

☐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

3) 항만·공항 등을 통해 수입된 식물등의 검역 위반행위 시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편·택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P 15. 참조)

3) 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발의(윤미향의원안 '23.7, 이달곤의원안 '23.11)되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계류 중에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4)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⁴⁾”라 함)는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생물체로서,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음.

LMO가 인체 및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행 법령은 LMO를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 심사 및 생산·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2023년 3월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주키니호박의 종자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밝혀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간(2023.03.26.~04.02.) 주키니호박 농가의 출하를 잠정 중단시킴.

또한, 전국의 주키니호박 재배농가(503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

4)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농식품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8개 농가가 미승인 LMO 종자로 주키니호박을 재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LMO 종자 발견 경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03.26.)에서 발췌)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되었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LMO로 밝혀진 주키니호박은 전량 폐기 처분되었으나, 전수조사 기간 동안 주키니호박의 출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주키니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출하 재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주키니호박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LMO 주키니호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농가 및 도매시장에 예비비 28억원을 지급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승인 LMO 종자를 국내로 반입한 B 업체는 2010년경 인터넷 구매를 통해 미국의 종자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됨.

해당 업체는 당시 현행법 제12조제9항6)에 따른 검역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국내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종자를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의혹으로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음⁷⁾.

□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키니호박 농가 등이 입은 피해에 비해 벌칙 수준이 가벼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기 위반행위와 유사한 ‘항만·공항 등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 등의 검역 위반행위’ 시⁸⁾에는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6)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7) 국립종자원 등은 해당 업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음

8)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목적일 경우

9)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 이에 개정안은 2023년 3월 발생한 주키니 호박 사건과 같이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물·택송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벌칙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고, 우편물·택송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우편물·택송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 건수 】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	1	4	4	33	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8. 12.)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우편물·택송품의 검역신고 의무를 위반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 즉 과실범인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13조 및 제14조¹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형사처벌하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실범과 관련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는 과실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식물 등을 우편물·택송품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위반행위가 2023년 발생한 주키니 호박 사건과 같이 우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실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10)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1) 법제기준과 실제 과실범 내용 발췌(P 789. 국회법제실, 2024 5.)

다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있어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안 제48조제3호의2의 “고의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¹²⁾

또한, 안 제48조의2제1호의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고의로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를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실로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과실범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

주택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안 제48조제3호의2의 “고의로”는 불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의 의견도 동일함.

□ 한편, 안 제48조제3호의2, 안 제48조의2제1호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 사건과 같은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식물 등이 담겨 있는 우편물·택송품을 수취한 자가 검역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아닌 형벌에 처해지게 됨.

항만·공항 등을 통해 수입된 식물등의 검역 위반행위 시에는 아래표와 같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위반행위 관련 현행 벌칙수준 】

구 분	검역 위반행위	벌 칙 수 준	
항만공항 등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반입 (현행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판매용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¹³⁾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¹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물·택송품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반입 (개정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판매용, 자가소비용 구분 X	고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8. 12.)

13)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14)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만 다른 동일한 “자가소비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고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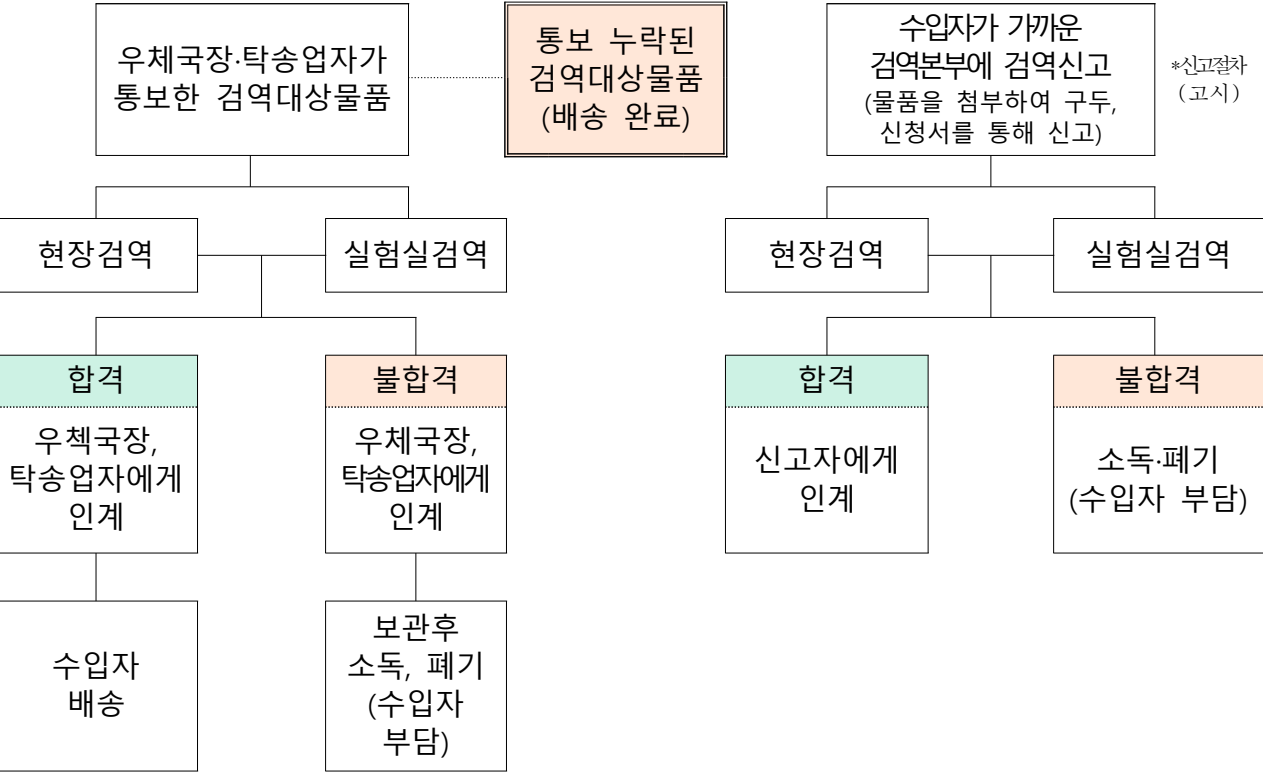
따라서, 개정안의 벌칙 수준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도 입법 취지, 동일 법률 내 법규정의 통일성, 행위 목적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붙임 1

우편·택송품 수입검역 절차

□ 검역 절차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8. 12.)

붙임 2

우편 수입식물 검역방법(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 등 검역요령 별표4)

1. 수입상황 통지방법 및 통지서의 제출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제우편물센터장(국제우체국장)은 우편수입식물의 수입 상황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전화, 구두, 서신, 모사전송, 전자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식물검역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가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역현장에서 그 통지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우편식물검역 통지서의 접수 및 처리기준

통지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고 검역기간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검역신청서 및 검역결과 처리방법

- 가. 엑셀(excel) 형태로 작성된 통지서가 통보된 경우 식물검역관은 동 통지서를 활용하여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 및 기록 관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나. 통지서에 기재된 물품이 여러 개의 포장상자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검역단위를 합쳐서 한 단위(1Lot)로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다. 통지서에 기재된 식물검역대상품이 비재식용으로 수입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동일한 품목이고,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었으며 개피·통상검역장에서 합격처리되는 경우 개별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건수와 수량을 합산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라. 금지품은 정보시스템 등록 후 동 물품의 화주에게 전화통보 또는 폐기명령서를 송부하여 화주가 금지품의 수입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금지품의 폐기에 동의하는 경우 통지서 원본의 특기사항에 통화일시, 송수하인 등을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마.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 품목은 검역관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결과 등을 기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품명 확인이 불가능한 식물의 처리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를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식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5. 검역을 받지 아니한 우편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수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수입검역 신고

- 가.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알린 것으로 본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에 대해 검역을 하여야 한다.
- 나.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탁송품을 받은 수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물품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검역신청 및 검역결과 처리

- 가.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품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현장검역 및 실험실 검역결과 등을 기록하여 처리한다.
- 다. 식물검역관은 재식용 식물류를 탁송품으로 수입한 자에게 품목과 수량 확인을 위해서 관련 서류(적하목록 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같은 수출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같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된 같은 품목(소매용으로 상품화 밀봉 포장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시행규칙 별표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다만, 금지품 또는 금지품이 혼입된 경우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품목은 검역신청서별로 검역을 하여야 한다.
- 마. 기타 탁송품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는 「수입식물검역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른다.

3. 보관 물품의 관리

- 가. 탁송업자는 식물류 보관시 병해충이 비산·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검출로 반송·폐기되는 물품은 격리된 장소에 병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품명 확인이 어려운 식물의 처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인지 알 수 없거나 수입금지식물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자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지품으로 적용하여 폐기할 수 있다.

붙임 4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8. 26.>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entry and inspection of Item subject to Plant Quarantine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Period should be completed	10일 Ten days
------	-----	------	------------------------------------	-----------------

수입자 (받는 자) Importer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상호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수출자 (보내는 자) Ex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번호 e-Phytosanitary certificate No.	

운송형태(수단) Transportation method		선(기)명 Conveyance		입항일 Date of arrival	
-----------------------------------	--	---------------------	--	------------------------	--

선적항 Loading port		경유지 Area of transit		국내 도착항 Port of arrival	
---------------------	--	------------------------	--	---------------------------	--

수출국 Exporting country	원산지 Place of origin	총 포장 개수 Total No. of packaging	단위 Unit	총 수량 Total No.	과세가격 Taxable value
--------------------------	------------------------	-----------------------------------	------------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번호 Bill of lading No.		화물관리번호 Control No. of freight	
---	--	-------------------------------	--

품목 수 No. of item	품목명 Item	학명 Scientific name	HS세번 부호 HS code No.	단위 Unit	수량 Quantity
---------------------	-------------	-----------------------	------------------------	------------	----------------

포장재의 상태 State of packaging	미가공 목재 Raw wood						가공목재 Worked lumber	4	비목재 Nontimber	5
	열처리(HT)	1	MB훈증	2	미소독 Non disinfection	3				

검역희망일시 Desired date and time of inspection		검역(반입)장소 Inspection place		선상검역 대상여부 Whether or not subject to a preliminary inspection	
---	--	------------------------------	--	---	--

정밀검사 의뢰 전문검사기관 Inspection agency	
--	--

신청인 요구사항 Requirements of the applicant	
---	--

「식물방역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for th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2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14-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 ~ 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2024. 8. 12.)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택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판매용’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우편물·택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판매용’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48조제3호의2 등).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8조제3호의2 중 “고의로 위반하여”를 “위반하여”로, “받은 자”를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48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의2로 한다.

안 제5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과태료 부과에”를 “과태료에”로 하고, 부칙 같은 조 중 “위반행위에”를 “행위에”로, “부과할”을 “적용할”로, “제5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를 “종전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제48조(벌칙) ----- ----- ----- ----- ----- -----.	제48조(벌칙) ----- ----- ----- ----- ----- -----.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1. ~ 3. (개정안과 같음) 3의2. ----- ----- ----- ----- <u>위반하여</u> ----- ----- ----- ----- ----- <u>받</u> <u>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u>
3의2. ~ 3의4. (생략)	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부터	3의3. ~ 3의5. (개정안 제3호의3부

4. ~ 10. (생략)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생략) <u>1의2.</u> (생략) 2. ~ 4. (생략) 제5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 ----- ----- ----- -----. <u>1.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 (고의로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u> <u>1의2.</u> (현행 제1호 와 같음) <u>1의3.</u> (현행 제1호 의2와 같음) 2. ~ 4. (현행과 같 음) 제5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터 제3호의5까지 와 같음) 4. ~ 10. (개정안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 ----- ----- ----- -----. <u><삭제></u> <u>1.</u> (개정안 제1호의 2와 같음) <u>1의2.</u> (개정안 제1 호의3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료를 부과한다.	-----.	-----.
1. ~ 3의3. (생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1. ~ 3의3. (개정안 과 같음)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 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검역을 받 은 자	<삭 제>	4. 판매 목적이 아 닌 자가소비용으 로 수입하는 식 물검역대상물품 에 대하여 제12 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 니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검 역을 받은 자
4의2. ~ 5. (생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4의2. ~ 5. (개정안 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행위 에----- ----적용할-----

	<u>과할 때에는 제50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종전의---</u> <u>-----</u> .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50조제3항제4호 중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을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여 검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48조(벌칙) ----- ----- ----- -----.
<u>3의2. ~ 3의4. (생 략)</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u> <u>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u> <u>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u> <u>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u> <u>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u> <u>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u> <u>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u> <u>다)</u>
4. ~ 10. (생 략)	<u>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u> 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제5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u>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u>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4. <u>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u> <u>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u>

